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 병역법 제12조제2항

○ 병역판정검사규정 제4장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 심의위원회 목적

○ 외부 인사를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체등급 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병역면탈 예방

○ 병역판정검사 수검자의 불만사항 처리 등으로 병역판정검사 만족도 제고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

- 위원장 : 병역판정관
- 위　원 :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지방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 간　사 : 병역판정보좌관

○ 외부위원 위촉

- 외부위원은 의사·간호사·병리사 등 의료분야 전문가나 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신체등급 판정이나 병무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위촉
- 위촉 결격자
  - 기소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벌금형 포함)
  -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 해촉 사유
  - 위촉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때
  - 제척·기피·회피 의무 등 청렴 윤리의무를 위반한 때
  -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금품·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 심의대상

○ 지방위원회 심의대상

1. 중점관리대상 질환자(규정제31조1항)로서 신체등위 4급~6급 판정대상자 다만,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 재병역판정검사 등으로 이미 신체등급(4급~6급)을 받아 역종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와 18세 모집병 지원자 및 학력,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으로 확정된 사람이 질병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2. 신체등급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3. <삭제>
4. 병역판정검사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6급 대상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인근청 본인선택자 중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동일한 검사반인 경우
   나. 신장·체중으로 신체등급이 판정된 경우
   다.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경우
5. <삭제>
6. 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여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된 사람. 다만, 재신체검사 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

○ 심의제외 대상

1.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아, 수형자 등 자질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3.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보충역 또는 질병치유 전시근로역으로서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4. 질병장애정도가 명확하여 병무청장이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사람. 다만, 병역사항 등으로 보아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위원회에 회부

5. 병역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다만,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애등록을 한 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
6. <삭제>
7. 질병의 발병·악화가 명백하여 병역면탈의 의심이 없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추가로 선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교통사고 등 질병의 발병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 질병의 악화로 수술이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한 사람
   - 외부 위탁검사로 질병 상태가 확인된 사람

❑ 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신검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거나, 처분 보류한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위원장은 오전과 오후 수검자로 구분하여 신체검사 종료 후 위원회를 소집하되,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심하여 신체검사 종료 시까지 대기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종료 전에 개별적으로 심의
   -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병역처분(변경)·처분보류 등을 결정하며, 간사는 심의대상자의 심의서를 출력하여 심의대상자의 학력, 부모직업 등 심의에 참고할 사항을 설명하고 신체등급판정 심의자명부(별지48호서식)에 기록·관리
   -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심의대상자 개인별로 질병·심신장애에 대한 증상 및 검사소견을 전 위원에게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설명
   - 각 위원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설명과 수검자의 병역사항 확인, 고의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의문사항을 확인한 뒤 심의서의 심의 의견란에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평가한 신체등급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고 서명

-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심의하거나 심의대상자 가족 등에게 심의과정을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 병역의무자가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을 결정하고,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보류”로 결정

○ 지방위원회 병역판정관은 위원회에서 “병역처분 변경”으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즉시 병역처분하고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병역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처분보류”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과장(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송부